

# 교원업적평가 규정

- |  |  |
|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제정 : 1999. 10. 1. 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: 2012. 4. 25.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: 2000. 3. 1.  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: 2015. 3. 20.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: 2001. 3. 1.  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: 2019. 3. 1.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: 2003. 7. 1.  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: 2019. 6. 18.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: 2007. 6. 1.  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: 2021. 2. 26.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: 2011. 6. 30. 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: 2022. 3. 1.  |
|  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: 2022. 8. 1.  |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과 고운학원 정관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임용 등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교원업적평가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 범위)**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전임교원(이하 “교원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

**제3조(용어의 정의)** 교수업적(이하 ‘업적’이라 한다)이라 함은 교육 및 연구영역, 봉사영역, 산학협력영역에 관한 전반적인 실적을 말한다.

**제4조(업적의 구분)** ① ‘교육 및 연구영역’이라 함은 수업, 강의, 학생지도 및 이와 관련된 노력과 실적, 그리고 교원의 전공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창의적 연구 및 창작활동의 결과물과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발표실적 또는 사회 및 학교에 기여한 연구활동의 결과를 말한다.

② ‘봉사영역’이라 함은 교육 및 연구영역과 산학협력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교·내외 봉사 및 근무실적과 관련된 업적을 말한다.

③ ‘산학협력영역’이라 함은 취업, 현장실습, 외부연구과제수행,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, 산업체 파견활동, 기타 산학협력과 관련된 노력과 실적을 말한다.

**제5조(평가대상기간)** 교원업적평가는 1년 단위로 시행하며, 평가 대상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업적으로 한다.

**제6조(평가제외자)** 교원이 휴직, 해외파견, 직위해제 등으로 인하여 한 학기 이상의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년퇴직 예정일 기준 잔여 임용기간이 2년 이내인 교원의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. 단, 평가가 불가피한 경우는 바로 전회의 평가를 당해 년도의 평가로 활용할 수 있다.

## 제 2 장 평가기구

**제7조(교원업적심사위원회)** ① 교원업적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교원업적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심의한다.

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## 제 3 장 평가절차 및 소명절차

**제8조(심사절차)** ① 총장은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매 년도 말을 기준으로 업적평정심사보조자료를 작성케 하고 이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토록 하여 평가한다.

② 교학처장은 소속교원이 제출한 업적평정 심사보조자료와 관련 부서장의 확인 증빙자료를 근거로 전임교원 업적평정표<별첨>를 작성한 후 이를 전항 서류와 함께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.

③ 위원장은 서류검토 후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 위원장은 평가결과를 소정의 기한 내에 총장에게 보고한 후, 해당 교수에게 총점을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소명절차)** 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원은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. 다만 제출서류 미비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, 추가로 제출된 연구실적물 등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할 수 없다.

② 위원회에서는 재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조서 및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재심결과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## 제4장 평가기준

**제10조(평가점수)** 교원업적에 대한 평가점수는 교육 및 연구영역, 봉사영역, 산학협력영역으로 하여 총 100점을 기본점수로 하고, 각 영역별 가산점수는 영역별 기본점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, 최종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한다.

**제11조(교육 및 연구영역의 평가 및 기준)** 교육 및 연구영역은 강의부문과 학생지도 부문, 그리고 논문 및 학술발표, 저서 및 창작, 예·체능발표, 기타 연구업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, 부

문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전임교원 업적평정표<별첨>와 같다.

제12조(봉사영역의 평가 및 기준) 봉사영역은 교내활동, 교외활동, 수범활동 외에 상벌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, 부문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전임교원 업적평정표<별첨>와 같다.

제13조(산학협력영역의 평가 및 기준) 산학협력영역은 취업 및 현장실습, 외부 연구과제 수행 및 산업체 파견활동,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, 기타 산학협력업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,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전임교원 업적평정표<별첨>와 같다.

## 제 5 장 평가결과 관리 및 활용

제14조(평가결과의 활용) 교원의 업적평가 결과는 당해 교원의 승진·승급, 재임용(계약제 포함) 및 각종 포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제15조(평가결과 비밀유지) 평가결과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4-1-5 교원업적평가 규정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하되, 전임교원 업적평정표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, 전임교원 업적평정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.
- ② (경과조치) 정직 3개월 이상 징계를 받은 자는 한 학기 평가가 없으므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되, 전임교원 업적평정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.
- ② (경과조치) 정직 3개월 이상 징계를 받은 자는 한 학기 평가가 없으므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한다.